탄 원 서

사 건 번 호	2026노2154 (제1심 2026고합87)
사 건 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 고 인	고동희 / 전 육군 대령
당 시 보 직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탄 원 인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피고인과 관계	_____
탄원인 주소	_____
연 락 처	_____
제 출 처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법 원 주 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1. 탄원의 취지

탄원인은 피고인 고동희에게 선고된 1심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출입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외형적 사실과 내란 목적을 알고 중요임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피고인이 사전에 알았던 내용과 실제 행위의 범위를 엄정하게 가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해 주시기를 예비적으로 청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기능 보호와 위법행위 규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2. 탄원의 이유

2-1. 1심 무죄 판단과 핵심 쟁점

2026년 8월 27일 1심은 피고인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들어가 서버실 관련 활동에 관여한 사정을 심리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폭동 가담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의 임무 수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핵심은 현장 출입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임무의 실제 목적을 어떻게 전달받고 이해하였는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강제 점거 또는 선관위 기능 정지라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 무죄 판단 유지의 구체적 사유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가담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전 계획 참여 여부, 임무 설명의 내용, 현장 지시와 보고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요원이나 상급자의 인식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서버실과 시설에 관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 목적과 실행 방식, 직원에 대한 강제력 행사 여부 등을 구분해 심리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장소 출입, 시설 확인, 정보 취급과 선관위의 기능을 강압으로 저지하기 위한 행동은 법률적 평가가 다릅니다. 1심이 남긴 합리적 의문이 항소심에서 해소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2-3. 직권남용 혐의의 별도 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어떤 직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명하였는지 또는 어느 직원의 권리행사를 구체적으로 방해하였는지 증거를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출입한 사실이나 계획처장이라는 직위만으로 직권남용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자의 명령과 피고인 자신의 결정, 직접 행동과 사후에 알게 된 사정을 구별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의 예비적 선처

만일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일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사전에 작전을 기획하거나 승인했는지,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정보, 현장에서 직접 내린 명령의 범위, 실제로 발생한 권리 침해와 결과, 부하 및 다른 지휘관과의 역할 분담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조직의 지휘명령 구조가 모든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실제 명령의 출처와 권한의 한계,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여지와 참여 기간은 형을 정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제출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생활·복무 관련 사정도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관대한 처분을 청합니다.

2-5.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해 주실 사항

선관위 과천청사 출입 전후의 지시·보고 내용, 서버실에 접근한 이유, 현장에서 직원에게 전달한 명령의 정확한 표현을 검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의 계획 전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있었는지 또한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1심이 내란 목적과 고의의 증명을 부족하다고 본 사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변경되는지, 아니면 기존 사실에 대한 평가만 달라지는지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죄 판단을 바꾸는 경우일수록 그 구체적 이유가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되기를 요청드립니다.

3. 결어

재판부께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즉 고의와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증거의 내용을 다시 살펴주시고,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고동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혹여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외형적 참여를 넘어 실제로 인식하고 실행한 내용에 맞는 책임만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질서의 수호와 무죄추정·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함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